

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4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의5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)에서 규정한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여 강화하고,

안전기준 중 주간 작업, 3인 1조 작업 원칙 등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조례로 예외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청소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함

2. 주요내용

가.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관련 안전기준 준수조항 신설(안 제6조의2제1항)

나.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안전기준 중 주간작업의 원칙 또는 3인 1조 작업원칙 예외사유 규정(안 제6조의2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24. 7. 28. ~ 2024. 8. 2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평창군 공고 제2024-1068호, 환경과-4129(2024. 7. 23.)호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1267(2024. 7. 18.)호]

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1267(2024. 7. 18.)호]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3286(2024. 7. 22.)호]

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4432(2024. 9. 13.)호]

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4934(2024. 9. 26.)호]

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생활폐기물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) ① 군수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경우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간작업의 원칙 또는 3명(운전자를 포함한다) 1조의 작업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, 재난,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
2.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 준수 및 폭염, 강추위, 폭우, 폭설, 강풍,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중지 및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
3. 자동상차장치, 압착장치 등 상차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집게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
4. 차량에 적재된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

5.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,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< 폐기물관리법 >

제14조의5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)

-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·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<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>

제16조의3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)

-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해야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수가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경우
 2.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경우
-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
 1.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·운영할 것
 - 가.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
 - 나.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
 - 다.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
 2. 안전화, 안전조끼,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
 3.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. 다만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 - 가.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
 - 나. 3명(운전자를 포함한다)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
 - 다. 폭염·강추위, 폭우·폭설, 강풍,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도시안전국 환경과장 전원표
연락처	(033) 330 - 2340